

<p>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 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 략)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~ ⑥ (생 략) ⑦ 제6항의 경우에 <u>컨테이너</u>에 관</p>	-----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4조(납세지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폐기물: 폐기물 매립량 톤당 6 천원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<u>컨테이너 및 폐기</u></p>
---	--